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A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Q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나 신설조항은 사회통례에 비추어 불이익 여부 판단.

A 신설조항은 사회통례에 비추어 불이익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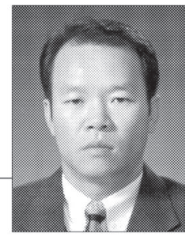
A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조건에 내용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 노동조합이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을 55세까지로 규정한 조치가 종전부터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사회 일반적인 다른 예에 비추어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사용자의 기존 근로조건이 얼마만큼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점은 노동조합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33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근저당권부채권을 변제 받은 후 다시 대여할 때 근저당권설정증기의 유효여부】

Q 저는 매에게 금 2,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甲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았지만 위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던 중, 다시 甲에게 동일한 금액을 빌려주면서 위 근저당권 등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A 등기유용에 대하여 관례는 "실질 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되고(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1989. 10. 27. 87다 카425), 당사자간에 구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원인관계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369조, 1970. 5. 13. 69나808)

즉,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종전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더 잘 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

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186조, 제369조, 1998. 3. 24. 97다 56242)

이는 구 등기가 소멸되었다면 그 순위가 올라갔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구등기가 유용됨으로써 막대한 법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이 없어 유용이 가능하고 유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등기와 일치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요즘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본다는 소리를 듣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궁금하여 열어본 페이지 목록을 살펴보니... 아한 검색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아이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A 아드님의 일 때문에 충격이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생인데 벌써부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터넷 클릭을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시

대이니 만큼 점점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가 낮아지고 있고, 인터넷 클릭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상태에서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니만큼 아이에게 음란물이 좋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납득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드님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성적 성숙과정을 격려 받고 지도 받을 때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

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드님의 수준에 맞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후에 아드님도 읽게 하셔서 서로 같이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컴퓨터와 함께 하는 생활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나 주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올바른 인터넷의 사용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할 수 있게 하고, 하루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간을 미리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드님과 함께 의논을 잘 하셔서 규칙을 세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Q 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A • 신청방법 : 지정배전선로(전주, 전선)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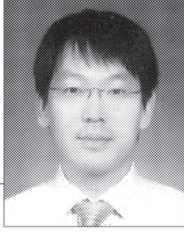
▲구비서류
• 건물 신·증축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 건축허가

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 할 수 있음
• 구내활용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농지활용 : 토지대장등본, 현장사진
• 도로공사 : 사업시행계획서 사본, 도로공사 사업고시 사본,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본 등
• 공공용지 활용 : 이설위치에 대한 지역주민 합의서, 현장사진
• 사유지내의 지정전주 이설 요청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공사비 부담 주체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가.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여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 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독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독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이설된 경우)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 한전 부담으로 이설)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박으뜸



알레르기성비염

1. 알레르기성비염이란 꽃가루나 집먼지, 동물의 털, 곰팡이 균, 담배, 음식물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한 반응이 코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과민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세가 결막염 형태로 눈에 나타나거나 천식 형태로 기관지 등에 나타날 수 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2. 치료
1)회피요법: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항원)을 제거하거나, 그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원인인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이 주로 이용된다.
2) 면역요법(탈감작요법):위의 방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시도되는 치료방법으로 이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찾아 그 물질을 희석하여 체내에 서서히 증량하면서 투여함으로써 그 물질에 대한 면역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본원에서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알러지클리닉을 개설하여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정확히 찾아내 이에 적합한 치료를 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요법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로 많은 알러지성 비염 환자에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
3)대증요법(증상 치료):회피요법이 곤란한 경우에 시행하며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이에 효과가 없을 때 혈관수축제와 함께 복용한다. 이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주로 코 분무약 형태로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병의 특성상 완치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끈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246)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위약금은 기타소득】

Q 아파트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2억 원의 10%인 2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통보해와 계약금에 상당하는 2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받았습니. 이때 위약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A 현행 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위약금으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위약금 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면 기타소득과 관련한 세금문제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상인 경우 위약금 수령인은 다음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위약금의 경우 필요경비(80%) 인정 범위가 주택임대차임대금에 한하기 때문에 위약금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는다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440만원을 차감한 1,540만원을 수령하고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천만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타 소득금액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재산권에 대한 위약·해약'으로 위약금을 지급 받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하던 채권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변경을 통해 채무자에게서 지급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귀사의 제품 포장에는 EPS 산업이 함께 합니다!
고품질! 저단가!
• 진공성형 : 각종 문구류 케이스, 식품용기, 농자재류, 전자부품트레이, 각종 브리스타용 덮개 등
• 계도바시 : 오디오·비디오 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학습교재 등
• 고주파가공 : 브리스타접착, 크레파스, 각종 필기류 등 경·연질 접착
• 건축자재 : 가설 방음벽, 건축내외장재-에버우드/뱀부월드
주소 :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237-3
전화 : 031)543-8338 H.P 011-796-4811
www.epsco.co.kr